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일자 : 2022. 6. 14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으로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수산가공품에 대한 근거 법률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3년 연장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5항)
 - 감면기간 연장 : 2022년 6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 인용 조문 정비 : 제8조제5항 → 제8조제6항
- 나. 수산가공품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에 맞춰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부칙 조항 삭제(안 조례 제2620호 부칙 제3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2. 5. 6. ~ 5. 27.)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하고,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고, “수산물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전문판매점”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하고, “교부결정일로부터”를 “교부결정일부터”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을 “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감면받고자 하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하고,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로 한다.

조례 제262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생략)

1. 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10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

2025년 6월 30일---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8조제6항 -----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전문판매점-----

제10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 교부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생략)

1. (생략)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

결정일부터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
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
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
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
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조례 제262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
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
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 1대에 대
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
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 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
----- 감면받으려는 -----

----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
청서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조례 제262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삭 제>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
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
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하지 아니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⑧ (생략)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④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